

교육혁신위원회 규정

(제정 2011. 4. 13.)

(분리제정 2017. 9. 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육혁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연구 및 심의한다. <개정 2019.12.20.>

1.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선
2.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제도 개선
3. (삭 제)
4.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
5.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
6. 학생 학습역량 및 핵심역량 강화
7.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등의 개설 및 폐지
8.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된 중요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.

③ 학장, 교무처장, 학생취업처장, 기획처장,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 <개정 2020.4.14.>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학사 관련 업무에 대한 연구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교육혁신지원실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 <개정 2019.9.1.>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「학사관리위원회 규정」에 따라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